

10. 그밖의 복리후생 제도 등의

운영현황

(2022년 1/4분기)

기관명

1. 휴직급여

1) 휴직급여 지급기준

임원
해당사항 없음

정규직(일반정규직)

사유	급여 지급기준	지급기간	근거규정
업무상 공상	평균임금의 70%	산재로 승인받은 휴업기간	급여규정 제7조 (휴직자의급여)
업무외 질병	○기본연봉의 70% ○기본연봉의 50%	○1년 이하 ○1년 초과 2년 이하	급여규정 제7조 (휴직자의급여)
병역 휴직	-	-	-
고용 휴직	-	-	-
유학 휴직	기본연봉의 50%	2년 이내	급여규정 제7조 (휴직자의급여)
연수 휴직	기본연봉의 50%	2년 이내	급여규정 제7조 (휴직자의급여)
육아 휴직	-	-	-
가족 간호 휴직	-	-	-
해외 동반 휴직	-	-	-
(기관고유사유)	-	-	-

정규직(무기계약직)

사유	급여 지급기준	지급기간	근거규정
업무상 공상	평균임금의 70%	산재로 승인받은 휴업기간	급여규정 제7조 (휴직자의급여)
업무외 질병	○기본연봉의 70% ○기본연봉의 50%	○1년 이하 ○1년 초과 2년 이하	급여규정 제7조 (휴직자의급여)
병역 휴직	-	-	-
고용 휴직	-	-	-
유학 휴직	기본연봉의 50%	2년 이내	급여규정 제7조 (휴직자의급여)
연수 휴직	기본연봉의 50%	2년 이내	급여규정 제7조 (휴직자의급여)
육아 휴직	-	-	-
가족 간호 휴직	-	-	-
해외 동반 휴직	-	-	-
(기관고유사유)	-	-	-

비정규직

사유	급여 지급기준	지급기간	근거규정
업무상 공상	평균임금의 70%	산재로 승인받은 휴업기간	급여규정 제7조 (휴직자의급여)
업무외 질병	○기본연봉의 70% ○기본연봉의 50%	○1년 이하 ○1년 초과 2년 이하	급여규정 제7조 (휴직자의급여)
병역 휴직	-	-	-
고용 휴직	-	-	-
유학 휴직	기본연봉의 50%	2년 이내	급여규정 제7조 (휴직자의급여)
연수 휴직	기본연봉의 50%	2년 이내	급여규정 제7조 (휴직자의급여)
육아 휴직	-	-	-
가족 간호 휴직	-	-	-
해외 동반 휴직	-	-	-

(기관고유사유)	-	-	-
----------	---	---	---

2) 휴직급여 지급현황

임원
해당사항 없음

정규직(일반정규직)
해당사항 없음

정규직(무기계약직)
해당사항 없음

비정규직
해당사항 없음

2. 퇴직금

1) 퇴직금 적립 및 지급 기준

임원
해당사항 없음

정규직(일반정규직)		
항목	내용	근거규정
퇴직금 적립기준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한 경우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퇴직급여규정제6조
장기근속자 퇴직수당, 특별위로금 지급기준	-	-
경평 성과금 평균임금 포함 여부	-	-
명퇴수당, 명예퇴직금 등 지급기준	○ 정년잔여기간 1년이상 5년이내 = 기본급/2 x 정년잔여월수 ○ 정년잔여기간 5년초과 10년이내 = (기본급/4) x 정년잔여월수 ○ 정년잔여기간 10년초과인 경우 = 정년잔여기준 10년인 자의 금액과 동일한 금액	명예퇴직 및 희망퇴직 시행요령 제5조
비위행위자의 퇴직금 감액기준	1.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 가.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 : 퇴직급여의 4분의 1 나.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 : 퇴직급여의 2분의 1 2.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 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 가.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 : 퇴직급여의 8분의 1 나.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 : 퇴직급여의 4분의 1	퇴직급여규정 제9조의1

정규직(무기계약직)		
항목	내용	근거규정
퇴직금 적립기준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한 경우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퇴직급여규정제6조
장기근속자 퇴직수당, 특별위로금 지급기준	-	-
경평 성과금 평균임금 포함 여부	-	-
명퇴수당, 명예퇴직금 등 지급기준	○ 정년잔여기간 1년이상 5년이내 = 기본급/2 x 정년잔여월수 ○ 정년잔여기간 5년초과 10년이내 = (기본급/4) x 정년잔여월수 ○ 정년잔여기간 10년초과인 경우 = 정년잔여기준 10년인 자의 금액과 동일한 금액	명예퇴직 및 희망퇴직 시행요령 제5조
비위행위자의 퇴직금 감액기준	1.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 가.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 : 퇴직급여의 4분의 1 나.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 : 퇴직급여의 2분의 1 2.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 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 가.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 : 퇴직급여의 8분의 1 나.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 : 퇴직급여의 4분의 1	퇴직급여규정 제9조의1

비정규직

항목	내용	근거규정
퇴직금 적립기준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한 경우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퇴직급여규정제6조
장기근속자 퇴직수당, 특별위로금 지급기준	-	-

경평 성과금 평균임금 포함 여부	-	-
명퇴수당, 명예퇴직금 등 지급기준	○ 정년잔여기간 1년이상 5년 이내 = 기본급/2 x 정년잔여월수 ○ 정년잔여기간 5년초과 10년 이내 = (기본급/4) x 정년잔여월수 ○ 정년잔여기간 10년초과인 경우 = 정년잔여기준 10년인 자의 금액과 동일한 금액	명예퇴직 및 희망퇴 직 시행요령 제5조
비위행위자의 퇴직금 감액기준	1.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 가.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 : 퇴직급여의 4분의 1 나.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 : 퇴직급여의 2분의 1 2.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 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 가.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 : 퇴직급여의 8분의 1 나.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 : 퇴직급여의 4분의 1	퇴직급여규정 제9조의1

2) 퇴직금 가산 지급기준

임원
해당사항 없음

정규직(일반정규직)

(단위: %)

가산지급 사유	가산율
직무상 부 상.사망	해당사항 없음
직무외 부 상.사망	해당사항 없음
명예퇴직 수당	○ 정년잔여기간 1년이상 5년 이내 = 기본급/2 x 정년잔여월수 ○ 정년잔여기간 5년초과 10년 이내 = (기본급/4) x 정년잔여월수 ○ 정년잔여기간 10년초과인 경우 = 정년잔여기준 10년인 자의 금액과 동일한 금액
희망퇴직 수당	기본급의 6개월분

정규직(무기계약직)

(단위: %)

가산지급 사유	가산율
직무상 부 상.사망	해당사항 없음
직무외 부 상.사망	해당사항 없음
명예퇴직 수당	○ 정년잔여기간 1년이상 5년 이내 = 기본급/2 x 정년잔여월수 ○ 정년잔여기간 5년초과 10년 이내 = (기본급/4) x 정년잔여월수 ○ 정년잔여기간 10년초과인 경우 = 정년잔여기준 10년인 자의 금액과 동일한 금액
희망퇴직 수당	기본급의 6개월분

비정규직

(단위: %)

가산지급 사유	가산율
직무상 부 상.사망	해당사항 없음
직무외 부 상.사망	해당사항 없음
명예퇴직 수당	○ 정년잔여기간 1년이상 5년 이내 = 기본급/2 x 정년잔여월수 ○ 정년잔여기간 5년초과 10년 이내 = (기본급/4) x 정년잔여월수 ○ 정년잔여기간 10년초과인 경우 = 정년잔여기준 10년인 자의 금액과 동일한 금액
희망퇴직 수당	기본급의 6개월분

3) 퇴직금 가산 지급현황

임원
해당사항 없음

정규직(일반정규직)
해당사항 없음

정규직(무기계약직)
해당사항 없음

비정규직
해당사항 없음

3. 휴가 및 휴직

1) 휴가 운영기준

임원
해당사항 없음

정규직(일반정규직) (단위: 일)

공가 구분			공무원 복무기준	기관운영기준
경조사 휴가	결혼	본인	5일	5일
		자녀	1일	1일
	배우자출산		10일	10일
	입양		20일	20일
	사망	배우자	5일	5일
		본인.배우자의 부모	5일	5일
		본인.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3일	3일
		자녀와 그 자녀 의 배우자	3일	3일
		본인.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1일
	출산 휴가 (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출산 휴가)		90일 (120일)	90일 (120일)
여성 보건휴가		매월 1일(무급)	매월 1일(무급)	
방통대 출석		연가일수 초과시 수업일수	-	
재해구호휴가		5일	5일	
유산/사산휴가	임신기간 15주 이내	10일	11주 이내 5일/12주 이상 5주 이내 10일	
	임신기간 16~21주	30일	30일	
	임신기간 22~27주	60일	60일	
	임신기간 28주 이상	90일	90일	
	배우자 유산/사 산 시 남성 공무원	3일	-	
난임치료	인공수정	2일	3일(최초1일은 유급.)	
	체외수정	3일(배아이식) 4일(난자채취)	3일(최초 1일은 유급. 여성직원의 체외시술은 최초2일 유급)	
	정자채취	1일	-	
포상 휴가		10일	5일	
자녀돌봄휴가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2일 (3일)	2일 (3일)	
임신검진휴가		10일	1. 임신기간이 28주 이내인 경우: 4주당 1회 2. 임신기간이 29주에서 36주까지: 2주당 1회 3. 임신기간이 37주 이후인 경우: 1주당 1회	
가족돌봄휴가		-	10일	
기타 불가항력으로 출근이 불가능하거나 중대한 재해를 당하였을때		-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14일	
기타 이사장이 인정하는 경우		-	별도 사유 발생시 산정	
기타 재난/비상상황시		-	이사장 별도 산정	

정규직(무기계약직) (단위: 일)

공가 구분			공무원 복무기준	기관운영기준
경조사 휴가	결혼	본인	5일	5일
		자녀	1일	1일
	배우자출산		10일	10일
	입양		20일	20일
	사망	배우자	5일	5일
		본인.배우자의 부모	5일	5일
		본인.배우자의 조부모·	3일	3일

		외조부모		
		자녀와 그 자녀 의 배우자	3일	3일
		본인.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1일
출산 휴가 (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출산 휴가)			90일 (120일)	90일 (120일)
여성 보건휴가			매월 1일(무급)	매월 1일(무급)
방통대 출석			연가일수 초과시 수업일수	-
재해구호휴가			5일	5일
유산/사산휴가	임신기간 15주 이내	10일	11주 이내 5일/12주 이상 5주 이내 10일	
	임신기간 16~21주	30일	30일	
	임신기간 22~27주	60일	60일	
	임신기간 28주 이상	90일	90일	
	배우자 유산/사 산 시 남성 공무원	3일	-	
난임치료	인공수정	2일	3일(최초1일은 유급.)	
	체외수정	3일(배아이식) 4일(난자채취)	3일(최초 1일은 유급. 여성직원의 체외시술은 최초2일 유급)	
	정자채취	1일	-	
포상 휴가			10일	5일
자녀돌봄휴가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2일 (3일)	2일 (3일)
임신검진휴가			10일	1. 임신기간이 28주 이내인 경우: 4주당 1회 2. 임신기간이 29주에서 36주까지: 2주당 1회 3. 임신기간이 37주 이후인 경우: 1주당 1회
가족돌봄휴가			-	10일
기타 불가항력으로 출근이 불가능하거나 중대한 재해를 당하였을때			-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14일
기타 이사장이 인정하는 경우			-	별도 사유 발생시 산정
기타 재난/비상상황시			-	이사장 별도 산정

비정규직

(단위: 일)

공가 구분			공무원 복무기준	기관운영기준
경조사 휴가	결혼	본인	5일	5일
		자녀	1일	1일
	배우자출산		10일	10일
	입양		20일	20일
	사망	배우자	5일	5일
		본인.배우자의 부모	5일	5일
		본인.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3일	3일
		자녀와 그 자녀 의 배우자	3일	3일
		본인.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1일
	출산 휴가 (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출산 휴가)		90일 (120일)	90일 (120일)
여성 보건휴가		매월 1일(무급)	매월 1일(무급)	
방통대 출석		연가일수 초과시 수업일수	-	
재해구호휴가		5일	5일	
유산/사산휴가	임신기간 15주 이내	10일	11주 이내 5일/12주 이상 5주 이내 10일	
	임신기간 16~21주	30일	30일	
	임신기간 22~27주	60일	60일	
	임신기간 28주 이상	90일	90일	
	배우자 유산/사 산 시 남성 공무원	3일	-	
난임치료	인공수정	2일	3일(최초1일은 유급.)	
	체외수정	3일(배아이식) 4일(난자채취)	3일(최초 1일은 유급. 여성직원의 체외시술은 최초2일 유급)	
	정자채취	1일	-	

포상 휴가		10일	5일
자녀돌봄휴가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2일 (3일)	2일 (3일)
임신검진휴가		10일	1. 임신기간이 28주 이내인 경우: 4주당 1회 2. 임신기간이 29주에서 36주까지: 2주당 1회 3. 임신기간이 37주 이후인 경우: 1주당 1회
가족돌봄휴가		-	10일
기타 불가항력으로 출근이 불가능하거나 중대한 재해를 당하였을때		-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14일
기타 이사장이 인정하는 경우		-	별도 사유 발생시 산정
기타 재난/비상상황시		-	이사장 별도 산정

2) 공무원 복무규정 외 휴가

임원
해당사항 없음

정규직(일반정규직)

(단위: 일)

휴가사유	일수
가족돌봄휴가	10일
기타 불가항력으로 출근이 불가능하거나 중대한 재해를 당하였을때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14일
기타 이사장이 인정하는 경우	별도 사유 발생시 산정
기타 재난/비상상황시	이사장 별도 산정

정규직(무기계약직)

(단위: 일)

휴가사유	일수
가족돌봄휴가	10일
기타 불가항력으로 출근이 불가능하거나 중대한 재해를 당하였을때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14일
기타 이사장이 인정하는 경우	별도 사유 발생시 산정
기타 재난/비상상황시	이사장 별도 산정

비정규직

(단위: 일)

휴가사유	일수
가족돌봄휴가	10일
기타 불가항력으로 출근이 불가능하거나 중대한 재해를 당하였을때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14일
기타 이사장이 인정하는 경우	별도 사유 발생시 산정
기타 재난/비상상황시	이사장 별도 산정

3) 장기근속 휴가/휴직제도 운영기준

임원
해당사항 없음

정규직(일반정규직)
해당사항 없음

정규직(무기계약직)
해당사항 없음

비정규직
해당사항 없음

4) 근무시간 중 체육·문화의 날 등 운영기준

임원
해당사항 없음

정규직(일반정규직)

해당사항 없음

정규직(무기계약직)

해당사항 없음

비정규직

해당사항 없음

기준일	2021년 12월 31일	제출일	2022년 04월 06일
-----	---------------	-----	---------------

기관 공시 담당자

구분	담당자명	부서명	전화번호
작성자	원은혜	경영지원본부 인재경영실	042-865-8885
감독자	김인신	경영지원본부	042-865-8880
확인자	한상문	감사부	042-865-8920